

07-15

KISDI 이슈리포트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강하연·김성웅·박민정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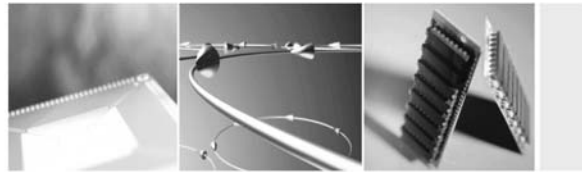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2007. 11. 26

강하연 · 김성웅 · 박민정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 1 | 개괄
- 2 | 한-EU FTA 주요 이슈
- 3 | 결론 및 시사점

강 하 연

- tumest@kisdi.re.kr, 02-570-4280
-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학사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석사
-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박사(정치경제 및 산업정책 전공)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미 FTA 협상 대표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FTA IT 협상 추진단 위원/간사
- 저서: “IT 무역과 통상현안” 『IT 산업과 한국경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 FCC 무선통신 허가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이드라인 해설(미 통신법 310조)」 KISDI
이슈리포트 05-13
“미국 엑스-플로리오법의 특징 및 시사점-통신서비스 분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등

김 성 응

- woongnice@kisdi.re.kr, 02-570-4436
- 한국외대 정치학 학사/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박 민 정

- mjpark@kisdi.re.kr, 02-570-4345
- 이화여대 영문학 학사/고려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본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도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목표아래 다수 국가와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금년 미국이라는 거대선진국과의 FTA 체결 이후 유럽 대륙의 제1경제권인 EU와의 신속한 FTA 협정 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의 분야별 협상에 있어 조율이 늦어지면서 연내 타결이라는 계획은 요원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한-EU FTA 협상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측 이익 극대화 및 긍정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 주요 의제 및 동향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EU는 외형적으로는 단일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각각의 제도를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04년 EU 프레임워크 지침을 통해 EU 통신시장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미래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개별회원국의 속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다. 결국, 협상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는 EU라는 단일체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 회원국과 그들의 제도 및 관행에 대해 조정, 조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동 보고서는 통신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제기된 한국 및 EU 양측간의 시장진입 제도, 정부의 사업자 지분보유 및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 허가수수료 및 행정수수료,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양측의 제도적 및 내용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시장진입규제 제도상 EU의 신고제와 우리나라의 허가제의 차이, 정부의 사업자 지분보유로 인한 규제기관의 독립성 논란,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없는 EU의 허가수수료 제도 이슈, 양측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보편적서비스 제도상의 대상 및 손실보전의 차이 등은 협상 과정에서 서로 조율해 나가야 할 의제들이다.

통신서비스는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적 성격도 있지만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인프라·기기·S/W·콘텐츠 등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IT 산업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다보니 시장개방을 통한 새로운 교역 및 투자 기회 창출에 한국 및 EU 양측이 욕심을 내는 분야이기도 하다.

양측간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협상은 서로간의 제도적 규범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협상과 통신 분야의 실질적 이해와의 현명한 조율을 통해 우리의 통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2007년을 넘어 2008년으로 협상 타결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상기한 협상 쟁점의 결과에 따라 타결 또는 지연으로 갈 수도 있다. 협상결과의 긍정적 마무리가 가능한지는 협상의 향방을 좀 더 지켜봐야 자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1. 개 괄

가. 검토배경

- 한-EU FTA 협상이 5차까지 진행되는 등 협상과정의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협상 의제 및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
- 향후 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EU와 한국 양측간 차이점을 파악하여 협상력 제고 및 강화에 일조
- 한-EU FTA는 미국이라는 선진 거대경제와의 FTA를 타결한 이후 우리 협상력의 시험대로서, 한-미 FTA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이후 중국, 인도, 일본 등과의 협상에 있어 실질적 토대 마련

나.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¹⁾

- WTO DDA 다자협상과 동시에 FTA라는 양자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해외시장 개방 및 시장수요 확보에 진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정책 차원에서 동시다발적 FTA 체결을 목표로 기체결국, 협상진행국, 협상준비국, 공동연구국 등으로 나뉘어 FTA를 추진하고 있음

(1) 기체결국

- 칠레: 2004년 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1) 외교부 FTA 추진 로드맵, 2003. 8, 2007. 4.

외교부 FTA 추진단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싱가포르: 2006년 3월 발효. ASEAN 시장 교두보
- EFTA: 2006년 9월 발효. 세계 최고 소득수준 국가와의 FTA
- ASEAN: 기본, 분쟁, 상품 분야 6월 1일 발효. 서비스투자 분야 2007. 11. 21 협상 타결²⁾. 5대 교역상대 신흥시장과의 FTA
- 미국: 2007년 4월 협상 타결. 국회비준 추진. 최초 선진거대경제권과의 FTA

(2) 협상진행국

-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2007. 11 제12차 협상 진행, 북미시장 교두보
-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8차례 CEPA³⁾ 협상 개최, BRICs 국가와의 FTA
- 멕시코: 2006년 2월 협상 개시, 3차례 SECA⁴⁾ 협상 개최, 4차부터 FTA로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⁵⁾ 북중미 시장 교두보

2) 태국은 동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미완료함에 따라 금번에는 서명하지 못하였고, 추후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동 협정에 서명키로 함

외교부 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교섭총괄과(제07-732호), 2007. 11. 21

3)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CEPA: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임

4)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SECA: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 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와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 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FTA의 전 단계로 추진된 사례가 있는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A)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외교부 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7), 2006. 2. 6

- 일본: 2003년 12월 이후 6차례 협상 진행. 농수산물 분야 양측간 이견으로 2004년 11월 이후 협상 교착
- EU: 2007년 5월 협상 개시, 5차례 협상 개최

(3) 협상준비국

- GCC: 협상출범을 위한 여건 조성 중, 2007년 11월 사전협의 개최, 신흥 유망 시장 및 자원부국과의 FTA

(4) 공동연구국

- 중국: 2007년 3월 공동연구 개시. 3차례 공동연구 개최. 1위 교역상대국
- MERCOSUR: 2005년 5월 공동연구 개시 4차례 공동연구 완료. 2007년 11월 무역자유화 공동연구 보고서 공식 완료⁶⁾, 협상출범 검토중. BRICs 국가와의 FTA

5) SECA를 한 단계 높여 정식 자유무역협정(a full 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기 위한 양자 통상협상을 재개하기로 공식 합의함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대변인, 2007. 8. 9

6) 2007년 11월 정책협의회 계기에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공동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함. 동 보고서는 각국 정부 및 학계가 참여하여 중남미 최대 지역 경제협력체이자 회원국의 경제규모 및 발전정도가 상이한 MERCOSUR와 한국과의 무역 자유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연구하여, 향후 양자간 FTA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

※ 무역협정(TA): 교역확대를 위해 둘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자유무역협정이나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 구체적인 형태를 전제하지 않은 것임

다. 한-EU FTA 협상 진행현황⁷⁾

(1) 참여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한-EU FTA

-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한-EU FTA를 지속적으로 검토
- 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7월 및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각 2차 및 3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지난 10월 15~19일 서울에서 4차 협상을 완료하고 5차 협상은 11월 19~24일 다시 벨기에에서 개최
 - 4차 협상까지 서비스 분야 협정문을 검토하였고, 특히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에서는 서비스 협정과 양허안의 적용범위를 EU 회원국은 물론 기초 자치단체까지 포함하기로 함
 - 5차 혹은 6차 협상에서 수정 양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 이는 한미 FTA가 5차 협상 때 확인작업을 한 것에 비하면 빠른 편임⁸⁾
- 외교부는 올해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상품 양허의 차질로 인해 금년 안에 협상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임
 - 6차 협상은 내년 1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

(2) 협상 경과

- 한-EU FTA 출범 결정: 2007년 5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 출범 공식 선언: 2007년 5월 6일 한-EU 통상장관회담

7) 외교부 보도자료, FTA교섭총괄과(제07-726호), 2007. 11. 16.

8)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 9. 21일자.

- 1차협상: 서울, 2007년 5월 7일~11일
 - 상품, 서비스/투자 등 4개의 분과를 설치하고, 필요시 기술적·세부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분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합의
- 2차협상: 벨기에, 2007년 7월 16일~20일
 - 상품·서비스·정부조달 개방안 교환 및 협의
- 3차협상: 벨기에, 2007년 9월 17일~21일
 - 우리측의 수정된 상품양허안, 설립(투자) 및 금융서비스 양허 초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양허협상 개최
- 4차협상: 서울, 2007년 10월 15일~19일
 - 분야별 통합협정문과 양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
- 5차협상: 벨기에, 2007년 11월 19일~23일
 - 상품양허와 관련, EU측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개선을 전제로 우리로서도 한미FTA 수준을 참고하여 우리의 양허를 개선하되, 우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외적 취급을 확보해 나가는 등 양측 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최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

라. 한-EU FTA의 의의⁹⁾

(1) 미국 이후 세계최대 거대 경제권과의 FTA

- 한-미 FTA 이후 중국, 일본 이전에 또 하나의 거대경제권과의 FTA

9) KISDI 정책동향 제19권 14호, 김성웅, 2007 美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EU의 통신시장 무역장벽, 2007. 8.

- EU는 우리나라 제2위 교역상대국으로, 제2위 수출국이며, 중국, 일본, 미국 다음의 제4위 수입국
 - ※ 총교역은 중국(19.7%), EU(12.9%), 미국(11.8%), 일본(11.5%) 순(〈별첨〉 한국의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 우리나라는 EU의 제8대 교역상대국
 - ※ 대 EU 수출은 365.1억불로 전년대비 18.9% 증가. 대 EU 수입은 240.4억불로 전년 대비 23.0% 증가(〈별첨〉 한-EU 교역동향)
- EU는 제1위의 한국 투자국이며, 우리나라의 제3위 투자 대상국
 - ※ 2006년 말 기준 EU는 총 404.5억불 한국 투자. 한국은 137.9억불 EU 투자(〈별첨〉 한국의 대EU 투자, EU의 대한 투자)
- 한미 FTA 협상으로 축적된 '협상력의 시험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미국이라는 거대선진국과의 본격적인 협상 경험을 통해, 협상테이블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나은 협상 전략 시현
 -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될 주요 협상 대상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의 개방화 실현 가능

(2) 대륙거점 확보

- EU와의 FTA는 우리에게 FTA 네트워크 형성을 완성해가는 교두보
 - 한-미 FTA(미주), 한-싱가폴(ASEAN), 한-칠레(중남미)에 이은 유럽 대륙의 FTA 네트워크 구축
- 대륙별 FTA 형성을 통해 대륙으로의 수출 통로 확보라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 목적에 부응
 - 한국의 EU 시장 점유율은 2004년 2.93%에서 2005년 2.8%로 0.13% 감소.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EU와의 교역이 증가 추세

- 경제적 파급효과 획득
 - EU와의 FTA는 가시적인 GDP 증가 및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잠재적으로 시장 점유율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생산성 효과 고려시 실질 GDP 6% 증가, 고용 43만명 이상 증가(〈별첨〉 한-EU FTA 경제적 효과)
 - 특히, IT분야의 경우 수출 증가 및 교역규모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 한-EU FTA 체결의 IT분야 효과(관세 완전 철폐 가정시)
 - 한국 IT산업의 대EU 수출 및 수입은 각각 2억 4,710만 달러, 5,161만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무역수지 흑자는 약 1억 9,548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TA에 따른 교역규모 확대 효과는 약 1.4%로 예상(〈별첨〉 한-EU FTA 경제적 파급효과: IT부문을 중심으로)

2. 한-EU FTA 주요 이슈

가. 통신서비스 시장진입 제도

(1) 시장진입 관련 주요 의제

- 한국은 국내통신사업 진입제도가 허가제를 기초로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심사와 같은 엄격한 사전 규제가 존재하는 반면, EU는 일정 자격(requirement) 및 조건(condition)을 갖춘 경우 통지(notification)(또는 신고)만으로 인가해 주는 진입제도를 갖추고 있음

(2) EU의 시장진입 시스템

- EU는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통합된 시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별 면허(Individual Licenses)체제를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로 전환하고 인가조건을 간소화하였음
 - 일반인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는 허가와 같은 규제기구의 결정이나 행정조치 없이 통지(notification)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됨
 - 통지 내용은 각 회원국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사업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 사업 개시 예정일 등을 제출하도록 함
 - 단, 조건(condition) 및 요건(requirement)과 같이 사업자로서의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것을 제시함
- 주파수대역과 번호할당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의 특별 조건을 적용
 - 승인을 획득한 사업자는 주파수 이용권을 경매 등을 통하여 획득하고 면허(license)를 발급받게 되며, 따라서 사실상의 사업수행은 주파수 면허의 획

득으로 가능하게 됨

〈표 2-1〉 EU의 통신서비스 진입시스템

구분	대 상	절 차
일반인가	일반 전기통신 사업자	사업자 통지(조건, 요건, 내용) → 기한내 접수 → 규제당국 확인(인증) 후 발급 → 사업 개시
개별면허	주파수 및 번호할당이 필요한 전기통신 사업자	주파수, 번호, 관료권의 사용권에 대한 권리를 규제당국에게 요청 → 경매 등 방법으로 부여(비차별, 투명 원칙 준수)

○ 면허(license)는 사업 자격증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authorisation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판단할 때 우리측의 ‘사전 허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추정됨

※ 슬로바키아의 경우 통신법안에서는 General authorisation을 사용하고 있으나 통신위원회는 General license를 사용함

○ 시장진입 규제 장치 마련

– 규제기관은 사업자에게 일반인가요건, 이용권부여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반사항에 대한 해명 기회와 시정기간 부여
- 시정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인가 취소, 이용권 회수 조치 가능 등

○ 각국의 규제당국은 EU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일반인가에 첨부되는 최대 조건(인가지침 Annex A)”에서 선택적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표 2-2〉 EU 인가지침의 일반인가를 위한 조건

Authorization Directive Annex A:

일반인가에 첨부될 수 있는 조건(Conditions which may be attached to a general authorisation)

1. 보편적 서비스의 기금모집에 재정적 기여
2. 행정 비용
3. 네트워크의 상호접속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4. 번호의 접근가능성
5. 환경, 도시 및 국가 계획 요건; 공공 또는 사유지에의 접근 또는 사용의 부여 관련 요건:
공동배치 및 설비 관련 요건
6. '의무 전송(must carry)' 의무
7.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8. 소비자 보호 규칙
9. 해로운 내용 전송에 대한 제한
10. 통보 절차에 의거하여 정보 제공
11.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의한 법적 관여를 가능하게 함
12. 재난 시 긴급 서비스 제공
13. 전기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의해 야기되는 일반 대중의 전기 분야로 노출 제한 조치
14. 전기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당 지침의 제6조 제2항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접근 의무
15.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완전성 유지
16. 권한 없는 접근에 대한 공공 네트워크의 안전
17. 당 지침의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의 개별적 사용권의 부여에 종속되지 않는 경우, 1999/5/EC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른 라디오 주파수의 사용을 위한 조건
18. 표준 및/또는 세부규격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조치

○ 각국의 규제당국은 EU지침이 제시할 수 있는 다음의 “주파수/번호할당을 위한 조건 목록(AD Annex B/C)”에서 선택하여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표 2-3〉 EU 인가지침의 주파수 할당 및 번호 할당을 위한 조건

주파수 할당을 위한 조건 (Authorization Directive Annex B)	번호할당을 위한 조건 (Authorization Directive Annex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네트워크 유형, 기술 등의 명시: 즉, 기술/용도에 대한 제한 가능 서비스 제공 범위 등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유해한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 조건 이용기간 권리의 이전: 거래 및 임대에 관한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호가 사용될 서비스 명시: 용도에 대한 제한 가능 번호의 효율적 이용 번호이동성 이용기간 권리의 이전: 거래 및 임대에 관한 사항 등

○ EU 개별회원국의 시장진입제도 현황

회원국	시장진입제도 현황	관계법령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사전에 규제당국(RTR)에 통보(notification), RTR 확인 절차 수행(7일 이내) 단, 주파수 사용: 개별면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ecommunications Act 2003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별면허(Class Licence) 대상: 주파수 대역 사용, 위성시스템 접속, 희소자원 미사용 공중통신망(희소자원 미사용) 사업자 등 개별면허(Individual Licence) 대상: 희소자원 사용, 유선음성통신 제공,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 임대 회선 사업자 등 free regime: 주파수 대역 및 인터넷 접속 불필요한 사업자 등 규제당국(CRC)은 각 면허의 조건에 따라 면허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별면허의 경우, 대상자 신청서 CRC에 제출, CRC는 확인절차 수행 후 증명서 발행(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w of the Telecommunications(Prom. SG. 88/7 Oct 2003, amend. SG. 19/1 Mar 2005)
키프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OCECPR)에 통지 후 즉시 사업 개시 가능 단, 희소자원(주파수, 번호) 사용: 개별적 권리 획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 Law of 2004

2. 한-EU FTA 주요 이슈

회원국	시장진입제도 현황	관계법령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서비스 사업자: 중앙 상업등록소에 가입 또는 등록 후 통신위원회(ENCB)에 활동개시 통지 제출, ENCB 확인 절차 수행(7일 이내) - 단, 번호인가: 개별면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Passed 8 December 2004)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통신 네트워크/서비스사업자,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FICORA)에 통지, FICORA 확인 절차 수행(7일 이내) - 단, 공중 무선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개별면허 대상 - 주파수 면허 부여: MoTC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cations Market Act(393/2003)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보유 통신사업자: 일반적 허가제도에 따라 규제기관(ART)에 신고함으로써 사업 개시 - 단, 보편적 서비스 의무와 무선주파수 사용권한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No. 96-659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통신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BNetZA)에 통지 후 사업개시 가능, 규제당국 확인절차 수행(7일 이내) - 단, 관로권 관련: 기존의 1,2,3종 면허 체제가 여전히 유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communications Act (TKG) of 22 June 2004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통신 네트워크/서비스, 특수 라디오 네트워크 사업자: 등록선언 수행 후 3개월 이내 규제기관(EETT) 반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 - 단, 희소자원 사용, 관로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통신망 배치: 개별면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provisions(Law No. 3431/2006) • Regulation on General Authorizations(EETT Decision no 390/3/31-6-06)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통신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개시 30일 이전 규제당국(NHH)에 통지 후 사업개시 - 단, 주파수 사용: 개별면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 100 of 2003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ComReg)에 통지 후 사업개시 - 단, 주파수 사용: 개별면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cations Regulation Act, 2002(No. 20 of 2002) • Telecommunications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6(No. 34 of 1996)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회원국	시장진입제도 현황	관계법령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위원회(PUC)에 통지 후 사업개시 - 단, 희소자원 사용: 개별면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on Regulators of Public Services • Electronic Communications Law No 304 2004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전화 네트워크, 공중유선전화 서비스, 공중 무선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 규제기관(RRT)에 통지, RRT는 수령 확인 발행(7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der No. 176 of the Director of the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Engaging in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MCA) 통지 후 사업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ctronic Communications 2004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및 관련시설 제공자: 규제기관(UKE)에 통지, UKE는 7일 이내 등록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communications Act of 16 July 2004 •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Infrastructure of 21 Dec. 2004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ANACOM)에 통지, ANACOM 확인절차 수행(5일 이내) - 단, 관로권, 주파수, 번호 사용: 사용권리 획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w no. 5/2004
루마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주파수 사용 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ANRC)에 통지 후 사업개시 - 라디오 주파수 이용 개인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통지의무 사라짐('05년 7월 기준) - 단, 주파수 및 번호 이용: 면허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ernment emergency ordinance no. 70/2006 • Law no.239/2005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TUSR)에 사전 통지 후 사업개시 - 주파수 및 번호할당이 필요한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개별인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ecommunications Act of 2000 •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of 2004

2. 한-EU FTA 주요 이슈

회원국	시장진입제도 현황	관계법령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일반인가 대상 - 주파수 사용 사업자: 개별면허 대상 	• General Telecommunications Law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규제당국(Ofcom)에 통지 후 사업개시 - 이동통신: 기존의 사업인가 체제 유지 - 주파수 사용: 개별면허 대상 	• Consolidated Version Of General Conditions as at 26 April 2007

자료: ITI 국가별 자료, 각 국 규제당국 홈페이지, 관련 법령 등을 재정리

(3) 한국의 시장진입 시스템

- 한국은 통신사업자를 설비보유 여부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각기 허가, 등록, 신고의 진입제도를 부여함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라는 강력한 진입조건을 두고 있음

〈표 2-4〉 한국의 통신서비스 사업자 분류 및 진입규제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호	2호	3호	
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역무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구내에서 전기통신 역무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
역무 종류	전화, 전신, 전기통신 회선 설비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접속역무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서비스	재과금, 가입자모집,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	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역무 이외의 역무(인터넷 콘텐츠 등)
진입규제	세무역무별로 허가	등록			신고

자료: 박동욱 외, “기간통신사업 분류/허가제도 및 양수합병제도 개선방안”, KISDI, 2006

- 정부는 금년 3월 경쟁을 활성화하여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역무 분류체계 개선, 결합판매규제 완화, 재판매 의무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개발과 투자확대 유도, 통신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규제 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권리 및 의무¹⁰⁾

1.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및 기간통신사업 경영
 - 오직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기간통신사업 경영권은 정보통신부 허가를 통해 획득(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2. (전기통신업무를 위한) 토지 등의 사용(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43조)
3. 주파수의 이용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기간통신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외에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필요함
 - 주파수에 대한 이용 권한은 할당의 결과로 나타나게 됨
 - 주파수 할당 받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직위 필요(전파법 제10조 1항)
4. 보편적 역무 제공 및 손실보전 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2~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5)
 - 보편적 역무 제공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의무사항이며, 이외의 전기통신사업자는 면제가 가능한 사항임(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3의 ②)
5. 상호접속 협정체결의 의무 및 상호접속을 위한 전기통신설비 공동사용 허용(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6. 출연금 납부(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10) 박동욱 외, 2006 재구성

-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해 기간·별정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1/100비율 내의 출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함
- 7. 회계정리(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3조)
 - 기본통신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님

〈표 2-5〉 사업자별 적용 규제

구 분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진입 규제	역무별 허가	등 록	신 고
인수·합병	인 가	신 고	신 고
통신사업외 겸업	승 인	-	-
외국인 지분제한	49%	-	-
출연금	부 과	부 과	-
사업 휴·폐지	승 인	신 고	신 고
설비제공	할 인	-	-
가입자망 공동활용	적 용	일부 적용	일부 적용
상호접속	접속료	이용약관 적용	이용약관 적용
보편적서비스	서비스 제공 또는 손실 분담	-	-
회계 분리	역무별 분리	-	-
요금 규제	역무별 신고(인가)	-	-
번호제도	시내·시외·국제 이동전화번호	시외·국제식별번호	데이터망번호적용

자료: 박동욱, “융합화에 따른 통신사업 분류제도 개선방향,” 민관정보교류협의회 2007 논총집

〈표 2-6〉 한국의 통신사업자별 권리 및 의무

구 분	권 리	의 무
기간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 토지등의 사용 - 상호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의무 제공에 기여 - 상호접속 - 출연금 - 이용자 보호 - 서비스 품질 개선 - 회계정리/통계보고
별정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 이용자 보호 - 서비스 품질 개선 - 회계정리/통계보고
부가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보호 - 서비스 품질개선 - 회계정리/통계보고

자료: 윤석환 외, “통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정책 발전방향 연구”, KISDI, 2004. 12.

나. 사업자 지분보유 및 외국인 지분제한

(1) 주요 의제 및 협상 동향

-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관련 통신사업자의 정부보유 지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쟁점
 - 우리는 KT가 민영화함으로써 정부의 사업자 지분보유가 없으나, EU는 개별회원국의 정부 보유 지분이 남아있어 문제
- EU 측은 EU 내부적으로 개별 회원국을 각각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사업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정부 보유 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

- 외국인 지분제한의 경우, EU측은 일부 회원국들을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으나 우리측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의결권 주 49% 외국인 보유 한도를 두고 있음

(2) EU 회원국 정부의 통신사업자 지분보유 상황

- EU는 그 구성적 특성상 개별 회원국들의 정부보유 지분 상황이 상이함
 - 슬로바키아 등 구 동구권 국가 뿐만 아니라,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서구 국가들에서도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지분을 보유
 -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정부가 다수의 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 ※ OECD 보고서 뿐만 아니라, World Bank 등에서도 개별회원국의 정부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표 2-7〉 EU 주요 회원국 정부의 사업자 지분보유

회원국	통신 사업자명	정부 보유율(%)	비 고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27.4%	
벨기에	Belgacom	50%	(Belgacom이 소유)
	Belgacom Mobile	75%	
	B-Telecom, MET, IRISNET, ALE IGEHO, SEDITEL, INATEL, IMOGEL, TELELUX	100% 33.33%	
불가리아	BTC	35%	
사이프로스	CYTA	공기업	
체코	Cesky Telecom	0%	
덴마크	Tele Denmark	0%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회원국	통신 사업자명	정부 보유율(%)	비 고
에스토니아	Eesti Telefon	27.2%	
핀란드	Telia Sonera	59%	13.7%(핀란드 정부), 45.3%(스웨덴 정부)
	Elisa Ltd	0.65%	
프랑스	France Telecom	32.5%	
독일	Deutsche Telekom	14.83%, 16.87%	14.83%(정부직접보유) 16.87%(국책은행(KfW)을 통해 간접 보유)
그리스	OTE	48.6%	
	TELLAS S.A.	50%	Public Power Corporation의 자회사 PPC Tel. S.A.가 소유
	FORTHnet S.A.	23.1%	Public Foundation of Technological Research가 소유
	COSMOTE S.A.	64.37%	OTE가 소유
	VOICENET S.A.	100%	OTE 자회사 OTENET S.A.가 소유
헝가리	Matav Telecom	황금주 1	
아일랜드	Ericom	0%	
이탈리아	Agestel S.r.L.	100%	지자체 소유
	Brennercom S.p.A.	80%	지자체 소유
	Alpikom S.p.A.	60%	지자체/공공사업체 소유
	Infracom Italia S.p.A.	40%	지자체 소유
라트비아	Lattelekom	51%	
리투아니아	Lietuvos Telekomas	2%	
룩셈부르크	EPT	100%	
몰타	Maltacom	0%	
네덜란드	KPN Telecom	7.8%	
폴란드	TPSA	3.9%	

2. 한-EU FTA 주요 이슈

회원국	통신 사업자명	정부 보유율(%)	비 고
포르투갈	OniTelecom Infocomunicacoes, S.A.	15.68%	정부가 황금주 소유
	TMN-Telecomunicacoes Moveis S.A.	6.92%	
	PT Comunicacoes, S.A.	6.92%	
	PT PRIME-Solucoes Empresariais de Telecomunicacoes e Sistemas S.A.	6.92%	
	Novis Telecom S.A.	1.56%	
	Refer Telecom-Servicos de Telecomunicacoes S.A.	100%	
루마니아	Rom Telecom	45.99%	(정보통신부 보유)
슬로바키아	Slovak Telekom	49%	국유재산기금 15%, 정부 34%
슬로베니아	Telekom Slovenije	25.01%	
스페인	Telefonia	0%	
스웨덴	Telia Sonera	59%	13.7%(핀란드 정부), 45.3%(스웨덴 정부)
영국	BT	0%	
	Kingston Communications	30.6%	시의회가 소유

자료: 해당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및 OECD Communication Outlook 2007

(3) EU 회원국의 외국인 지분제한

- WTO DDA 양허에 의하면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 이외에 프랑
스도 외국인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기타 개별 회원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스페인, 불가리아, 헝가리 등도 외국
인 지분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표 2-8〉 EU 회원국 정부의 외국인 지분제한

구분	시장접근 제한(WTO DDA 양허 2005)
슬로베니아	외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지분 참여 제한 99%
	Foreign participation may not exceed 99 per cent of the equity.
폴란드	외국 지분 및 투표권 제한은 49%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lecom services provided using cable television and radio networks and for public cellular mobile telephone services and networks: The limitation of foreign capital and voting rights is 49%
프랑스	EC 역외국 자연인 또는 법인, 공중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radio-based infrastructure를 운영하는 설립인가된 기업의 20% 이상의 지분 또는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음
	Non-EC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may not hold directly more than 20% of the shares or voting rights of companies authorised to establish and operate radio-based infrastructure for th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For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companies or firms legally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laws of a Member State of the EC are considered EC juridical persons.

(4)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분제한

- 우리나라는 현재 WTO 양허안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한도 49% 및 간접투자한도 80%를 두고 있음
- 한미 FTA 통신서비스 양허협상(시장개방 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제한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현재의 49%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기로 합의되었음¹¹⁾

11) 자세한 내용은 강하연, 한미 FTA IT 분야 타결 내용 및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2007. 7. pp.31~32 참조

- 우리나라의 WTO양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외국인 투자 규정의 내용보다 더 보수적임(2004년부터 간접투자한도 철폐)
- 따라서 금번 한-EU FTA 협상에서는 WTO양허안과 한미 FTA양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양허의 수준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2-9〉 현행법상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제한형태	한국(전기통신사업법 6조)
직접투자 제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외국인 의결권주 투자 49%로 제한 - 외국인 의제 규정 적용(전기통신사업법 6조 2항: 최대주주가 외국정부·외국인일 경우 외국정부·외국인이 의결권지분의 15%이상 소유하는 국내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 - 별정 및 부가서비스 사업자는 외국인 투자제한 없음
간접투자 제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부터 간접투자 제한 철폐 - 단, 외국인 의제 규정 적용

다. 허가 수수료 및 행정수수료

(1) 주요 의제

- 우리측은 통신서비스 허가(license)와 관련된 수수료(fees)를 받지 않고 있으나, EU 측은 독립규제기관이 사업자로부터 허가수수료를 받아 조직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허가수수료 인정 여부와 관련 양측간 의견대립의 여지가 있음

(2) EU 회원국의 허가수수료 부과

○ 허가수수료의 개념

- 허가수수료(license fees)는 EU 지침상의 administration charges와 같은 개념인 것으로 판단됨
- 일반인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혹은 그 사용권이 부여된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요금(EU 인가지침 제12조)

EU Authorisation Directive: Article 12 Administrative charges

1. Any administrative charges imposed on undertakings providing a service or a network under the general authorisation or to whom a right of use has been granted shall:
 - (a) in total, cover only the administrative costs which will be incurred in the management, control and enforcement of the general authorisation scheme and of rights of use and of specific obliga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6(2), which may include cos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armonisation and standardisation, market analysis, monitoring compliance and other market control, as well as regulatory work involving preparation and enforcement of secondary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such as decisions on access and interconnection; and
 - (b) be imposed upon the individual undertakings in an objective, transparent and proportionate manner which minimises additional administrative costs and attendant charges.
2. Where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impose administrative charges, they shall publish a yearly overview of their administrative costs and of the total sum of the charges collected. In the ligh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sum of the charges and the administrative costs, appropriate adjustments shall be made.

○ EU 회원국 정부의 허가수수료 부과 현황

-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등: 독립규제기관 조직 운영비 정부가 100% 지원
- 기타 회원국의 경우 독립규제기관이 직접 허가수수료, 주파수수료, 번호

할당수수료 등을 받아 예산으로 사용(2004 ITU 보고서)

- 매출액 대비 허가수수료 비율도 단순한 행정비용 수준으로 보기에 높은 수준임

※ 2007 EU 위원회에서 제기한 수수료 관련 지적사항

- 벨기에: 규제당국 예산에 포함된 비용이 행정 비용과 큰 관련이 없어 보임

- 스페인: 행정 수수료 금액 조정 대신 흑자를 미래 주파수 규제당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마련

- 몰타: 총수입에 기초한 행정 수수료 계산이 중복 부과임을 토로

- 네덜란드, 프랑스: 대형 사업자에 적절한 요금 부과, 중형 기업에 flat fee, 소형 기업에 면제하는 행정수수료 부과 시스템 도입

※ 허가수수료의 매출액 대비 비율

국 가	비 율	수수료 형태
오스트리아	0.1~0.2%	revenue sharing
프랑스	1%	revenue sharing
그리스	0.025~0.5%	revenue sharing
아일랜드	0.2%	revenue sharing
이탈리아	3천8백만 유로	annual licensing fee
룩셈부르크	0.2%	revenue sharing
스페인	0.2%	revenue sharing

자료: ITU, Trends in Telecommunication Reform 2004/2005, 2006

※ 주파수 수수료

국 가	주파수 형태	주파수 수수료
오스트리아	GSM	242,000달러
벨기에	GSM	900달러
덴마크	GSM	Set annually under Finance Act using a pre-set calculation model
프랑스	GSM	5,969,000달러
아일랜드	3G	2,200,000유로
이탈리아	all mobile licences	1.5%
네덜란드	GSM	95,000달러

자료: ITU, Trends in Telecommunication Reform 2004/2005, 2006

(3) 허가수수료 관련 한국제도

-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내 규제기관의 특성상 허가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음
 -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하여 허가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음
- 다만 우리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spectrum fees), 보편적서비스기금(universal service funds) 및 연구개발기금(R&D funds)¹²⁾ 등을 부과하고 있음
 - 이는 EU측의 허가수수료와 별개의 개념임

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주요 의제

-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호접속 및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으로, 우리측과 EU의 지배적 사업자 개념 및 판단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타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2) EU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 SMP(significant market power)의 정의

- 시장지배력의 개념(EC조약 제82조)
 - “한 기업이 경쟁자들, 고객들,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에 대해 상당정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

12)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의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4, 전파법 제11조

- 시장지배적사업자(SMP)의 개념(EU Framework 지침)
 - 사업자가 “경쟁자들, 고객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한 정도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질 만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지칭

□ SMP의 판단

- SMP의 판단은 관련시장 확정 및 유효경쟁성 분석을 통해 판단
- 관련시장(relevant market) 확정은 시장을 구성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 수요/공급 대체성, 잠재적 경쟁위협 등을 판단기준으로 함
 - ※ 소비자의 지속적 필요, 가격, 주요 이용목적 등 해당 시장의 경쟁조건, 수요 및 공급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체성 판단
- 경쟁법 원칙에 의거, 관련시장의 유효경쟁성(effective competition) 여부를 판단(Framework 지침 제15조)
 - 특히, 관련시장이 비유효경쟁인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지배력 보유 사업자(SMP)를 지정하고 특정 규제의무를 부과
- SMP 지정은 단일지배력과 공동지배력 모두 고려하며 판단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음(Framework 지침 제14조)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

구 분	개 념	판단 기준
단일 지배력 (Single Dominance)	단일 기업이 보유하는 시장지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관련시장 점유율 25% 이상 – 40% 이상 보유사업자는 SMP를 갖는 것으로 추정 ※ 25%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시장에 대한 영향력, 매출액 비중, 가입자선로 통제정도, 자금력,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RA가 결정
공동지배력 (Collective Dominance)	관련시장 내에서 법적, 경제적으로 두개 이상 사업자가 지배적 위치를 보유하여 공동행위의 가능성을 갖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시장, 수요측면에서 정체하는 또는 적당한 성장, 수요의 낮은 신축성, 동종제품, 유사한 비용구조, 유사한 시장점유율, 기술 혁신, 성숙한 기술의 부족, 초과용량 결핍, 높은 진입장벽, 상쇄구매력의 부족, 잠재적 경쟁의 부족, 해당 사업자 사이에서 다양한 비공식적 또는 다른 연결, 보복 매커니즘, 가격경쟁의 부족 등이 있는 시장에 존재할 개연성 높음 (Framework지침 Annex II)

○ SMP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

구 분	규제 내용
투명성 의무	회계정보, 기술사양, 네트워크 특성, 계약조건, 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접속 지침 9조)
비차별 의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때 동일한 계약조건 적용. 자사, 자회사 및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 의무(10조)
회계분리 의무	회계분리의 의무와 다른 의무들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 정보 제출 의무(11조)
네트워크 설비의 접속제공과 사용 의무	접속제공사업자가 접속요청사업자의 합당한 접속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요청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이에 관련된 규제기관의 고려사항(12조)
요금규제와 원가회계 의무	사업자의 비용회수/요금설정과 관련하여 적당한 수준의 원가보상률을 규제기관이 통제하여 가격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의무(13조)

2. 한-EU FTA 주요 이슈

○ EU 회원국의 SMP사업자 지정 현황

구 분	Organisations with Significant Market Power			
	Fixed Operator Voice Telephony (Annex1 Part1)	Fixed Operator Leased Lines (Annex1 Part2)	Mobile Operator Mobile Services (Annex1 Part3)	Mobile Operator National Market For Interconnection
오스트리아	Telekom Austria	Telekom Austria	Mobilkim Austria max.mobil	Mobilkom Austria*
벨기에	Belgacom	Belgacom	Belgacom Mobile	Belgacom Mobile
덴마크	TeleDenmark	TelDenmark	TelDanmark Sonofon	None
핀란드	Sonera Local operators (Finnet Group)	Sonera Local operators (Finnet Group)	Sonera Radiolinja Oy Aland Mobiltelefon	Sonera Radiolinia Oy
프랑스	France Telecom	France Telecom	FT Mobiles SFR	FT Mobiles SFR
독일	Deutsche Telekom	Deutsche Telekom	None	None
그리스	OTE	OTE	Panafon STET Hellas	None
아일랜드	Eircom	Eircom	Eircell Esat Digifone	Eircell
이탈리아	Telecom Italia	Telecom Italia	T.I.M Pmritel	TIM Omnitel
룩셈부르크	EPT	EPT	EPT	None
네덜란드	KPN telecom	KPN telecom	KPN Mobile Libertel	None
포르투갈	Portugal Telecom	Portugal Telecom	TMN Telecel	None
스페인	Telefonica	Telefonica	Telefonica Mobil Airtel	Telefonica Mobil Airtel
스웨덴	Telia	Telia	Telia	Telia
영국	BT Kingston Commun.	BT Kingston Commun.	Vodafone Cellnet	None

자료: FTA 협상대상국 통신서비스 시장개방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 KISDI, 2006.

(3) 한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

- 전기통신 관련법상 시장지배력의 명시적 규정 없음

□ 지배적사업자 지정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필수설비 보유여부” 및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기준에 의하여 지배적 사업자 지정(제33조의5 제2항)
 - ※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역무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역무의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고시
 -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대하여 정통부장관이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고시(제29조 제1항)
 - 인가대상역무는 “당해 역무의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로서, 당해 역무의 전년도 매출액이 정통부장관이 역무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역무”(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이용약관의 인가)
 - ※ 현행 인가대상사업자는 KT(시내전화), SK텔레콤(이동전화), KT(인터넷접속)

□ 지배적사업자 규제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상호접속,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제

※ 상호접속 의무제공: KT 및 SKT/설비 의무제공 및 상면 의무제공: KT

마. 보편적 서비스

(1) 주요 의제

- 보편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범위 및 자격, 지정에 대해 양측간 차이가 있어 쟁점
 - EU는 모든 사업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제공 사업자 지정 가능성이 크며, 손실 보전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 수준도 다름

(2) EU의 보편적 서비스

- 보편적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 명시적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EU지침은 대상서비스를 가변적인 것으로 파악

구분	E U
보편적 서비스 정의	<p>'97년 지침에는 '이용자의 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특정한 품질을 지닌 일련의 서비스'(97/33/EC)</p> <p>2002년 지침서에는 보편적서비스의 명시적 정의 규정이 없고, 지침 내에서 추정 가능함</p> <p>1. 공동체 전역에 걸쳐서 효율적인 경쟁과 선택을 통하여 공중에게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p> <p>2. 모든 최종 이용자들이 경쟁을 왜곡하는 것 없이 특정한 국가의 조건의 관점에서 적정한 가격에 접근하는 특정한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서비스</p> <p>(Article1 scope and aim 1....good quality publicly available services through effective competition and choice...)</p> <p>(2. the minimum set of services of specified quality to which all end-users have access, at an affordable price in the light of specific national conditions, without distorting competition.)</p>
보편적 서비스 범위/대상역무	<p>보편적서비스지침(USD) 제1조, 제2조</p> <p>○ 보편적서비스 의무는 통신망에 대한 연결만을 의무화하며, 유무선 기술방식, 제공사업자 등은 제한하지 않음</p> <p>○ 음성 및 데이터를 포함하며, 구체적 내용은 회원국이 규정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된 장소에서 접속의 제공(제4조) - 전화번호부의 발행을 포함, 전화번호안내 서비스 제공(제5조) - 공중전화망, 대수 및 지리적 분포 고려한 공중전화 공급(제6조) - 장애자 또는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 대해 공중전화 서비스 및 번호안내서비스를 평등하고, 부담 가능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제7조) <p>※ 대상역무는 고정성이 아닌 가변적 개념: 재검토의무(제15조)</p>
	<p>USD 제4조 Provision of access at a fixed location</p> <p>USD 제5조 Directory enquiry services and directories</p> <p>USD 제6조 Public pay telephones</p> <p>USD 제7조 Special measures for disabled users</p> <p>USD 제15조 Review of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p>

-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 및 의무
 -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 선정될 수 있다는 원칙, 실질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
 -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의 세부사항은 회원국 재량사항

- 효율적, 객관적,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적용절차 의무 및 지정제도에 대한 입법 의무와 함께 사업자 지정시 선협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됨

구분	EU 보편적서비스지침(2002)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1개 이상의 사업자를 의무사업자로 지정하거나, 서비스별로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군 선정 가능 -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사업자로 선정될 기회 보장(선협적으로(a priori) 배제되어서는 안됨) - 효율적, 객관적, 투명한 사업자 선정제도 이용 의무(공개입찰, 경매 등) USD 제8조 사업자 지정(Designation of undertakings)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한 요금 수준 및 구조(제9조 1항) ○ 특별이용보장 규정 및 통신비 지출 조절(제10조) ○ 서비스 품질 유지(제11조)
사업자 의무	USD 제9조 요금의 채택(Affordability of tariffs) USD 제10조 지출 통제(Control of expenditure) USD 제11조 지정사업자의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of designated undertakings)

※ EU 주요국 보편적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현황

사업자 지정제도	회 원 국
공개경매절차 (open tender procedure)	-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신규 적용), 키프러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공개협의절차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	- 아일랜드, 영국, 슬로바키아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단순히 재지정되는 방식	- 라트비아 (사업자 지정 프로세스 부재로 매년 기존 사업자가 쉽게 재지정 되고 있어 보편적서비스지침 위반가능성 있음)
기존사업자가 과도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 스페인, 덴마크 (금년중 새로운 지정절차 개시 예정)
보편적서비스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재량권 행사)	- 독일, 룩셈부르크 ※ 시장이 보편적서비스 요소를 합리적 가격과 품질로 상업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재량권 행사

자료: EU 위원회 12차 보고서

- 보편적서비스의 손실비용산정 및 손실비용보전
 - EU는 준비용 고려하고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 손실 보전은 정부/사업자간 분담(비차별성, 경쟁중립성)

구분	EU 보편적서비스지침(2002)
보편적 서비스 손실비용 산정	-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편익, 비용 고려한 준비용 고려하여 계산 - 산정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는 수입 및 유형, 무형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요금은 원가를 반영해야 함(지침 Annex 4)
	USD 제12조 보편적서비스 비용(Costing of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
손실비용 보전 (재원)	○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일반예산 또는 사업자간 분담을 통해 준비용 보전 - 사업자간 분담방식 이용시, 통신규제기관 감독하 독립적인 분담제도 설립 - 명성, 비차별, 비례성 등 원칙 준수 및 사업자별 비용분담금 세분화 명시
	USD 제13조 보편적서비스 재원(Financing of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

※ EU 회원국 보편적서비스 손실비용보전 현황

- 회원국 관행은 다소 제한적인 측면
- 체코, 이탈리아: 분쟁 또는 행정적 지연으로 보상의 이행이 지연됨
- 벨기에: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불공정한 부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 채택 실패
- 프랑스: 지정사업자가 보상 혜택받는 유일한 국가

○ 절차 공개 및 투명성

- 공표나 고시를 통해 투명성 보장

구분	EU 보편적서비스지침(2002)
공개 및 투명성	○ 비용분담의 원칙, 사용된 메커니즘의 세부 사항 공개 보장 의무 ○ 실제 기금이 집행 될 경우에 보편적 역무가 계산된 비용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자 전체에 의한 부담을 특정하고 보편적 역무에 부가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확정하는 연례 보고서가 공표되는 것을 보장
	USD 제14조 투명성(Transparency)

(3)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 보편적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구분	한 국
보편적 서비스 정의	3. “보편적 의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의무를 말한다. 사업법 제2조 제1항 3호
보편적 서비스 범위/대상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서비스) -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특수번호전화, 선박무선전화서비스) -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 번호안내서비스는 보편적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적인 승인절차 없음 사업법 제3조의2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2조의 2

○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 및 의무

- 한국도 제한은 없으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설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

구분	한국 국내법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범위에 제한 없음: 모든 통신사업자 - 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예외 존재 - 지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 사업규모, 품질 및 요금 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여 지정 사업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서비스제공 사업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서비스 제공 또는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의무 ○ 해당서비스 제공의 방법 및 소요비용 등 보편적서비스 제공계획서 제출 사업법 제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 ※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KT로 지정, 기타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 특수번호, 요금감면서비스 제공사업자는 KT, SKT 등 8개업체이며, 손실보전은 없음

○ 보편적서비스의 손실비용산정 및 손실비용보전

- 한국은 비용과 수입 고려하고 손실보전은 사업자 능력, 매출액에 따라 분담 (비차별성, 경쟁중립성)

구분	한국 국내법
보편적서비스 손실비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이 되는 보편적서비스를 제한 -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 - 손실보전비율, 사업자 분담능력, 매출액 등을 고려 <p>시행령 제4항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p>
손실비용 보전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하기 위한 자금을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행령 제2조의4) ○ 단, 예외적으로 부담면제, 분담금 감경 및 가중, 상한제를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면제: 매출액 300억 미만의 별정,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는 제외(사업법 제3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 - 분담금 감경: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혹은 최근 3년 연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인 사업자에 대해 분담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시행규칙 제2조의5) - 분담금 가중: 이용약관의 인가대상인 사업자에 대해 분담비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중(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 상한제: 시내전화와 공중전화는 서비스제공사업자의 원가보상율이 100% 초과시 보전하지 않음(보편적역무고시 제20조) <p>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 제2조의5 보편적역무고시 제20조</p>

○ 절차 공개 및 투명성

– 한국도 공표나 고시를 통해 투명성 보장

구분	한국 국내법
공개 및 투명성	- 손실보전비율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서비스 요금감면비율과 보편적서비스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 세부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시행령 제2조의3 시행규칙 제2조의4 2항, 5항

3. 결론 및 시사점

가. 협상 쟁점

- 시장진입제도
 - EU의 단순 신고제도는 우리의 허가, 등록, 신고 체제와 다르므로 양측의 고유한 제도를 인정하고 타협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렴할 필요
 - EU 개별회원국 신고제도에 내재된 잠재적, 실질적 진입장벽의 유무를 파악할 필요
- 정부지분보유 및 외국인 지분제한
 - 외국인 지분제한의 경우 WTO 양허수준과 한미 FTA 수준¹³⁾ 사이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우리측은 EU 개별회원국 정부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협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필요
- 허가수수료
 - 허가수수료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 만큼 향후 협상에도 양측간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측은 각종 보고서에서 제기된 대로 EU 측 허가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협상력 제고할 필요
- 시장지배적사업자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지정, 의무 부과와 관련한 양측간 차이가 존재
 - 그러나 이는 양측간 통신규제제도의 차이 문제이며 이를 상호 인정할 필요

13) 한-미 FTA 협상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FTA추진단 홈페이지 참고

○ 보편적서비스

- EU의 보편적서비스 제공 의무는 원칙상 모든 사업자에 개방되어 있으나, 우리는 정부가 일정 요건을 고려해 지정한다는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손실비용 및 비용보전에 있어 EU와 차이가 있어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양측간 제도적 차이 인정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임

나. 정책적 시사점

○ 협상쟁점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것은 한-EU 간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

- 통신서비스 규제분야의 통일화를 추구하는 EU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개별회원국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실제 협상 전략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한-미 FTA 협상 결과의 이상을 요구하는 EU와 그 이하로 마무리하려는 우리측의 협상 진행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

○ 우리 입장에서는 EU의 특징인 개별회원국의 제도적 차이를 어떻게 수렴하도록 할 것인지 협상 레버리지 증대 방안을 남은 협상기간 동안 강구할 필요

○ 조속한 FTA 체결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할 때 협상 결과도 우리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내용에 충실한 협상을 진행해야 함

참 고 문 헌

- 강하연, 한미 FTA IT 분야 타결 내용 및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2007. 7.
- 김성용, 2007 美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EU의 통신시장 무역장벽, 정보통신정책 (제19권 14호 통권421호), 2007. 8.
- 박동욱, 융합화에 따른 통신사업 분류제도 개선방향, 민관정보교류협의회 2007 논총집, 2007
- 박동욱 외, 기간통신사업 분류/허가제도 및 양수합병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06. 12.
- 윤석훤 외, 통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정책 발전방향 연구,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4. 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시다발적 FTA의 경제적 효과, 2007. 7.
- _____, 세계지역연구회 세미나, 한-EU FTA의 효과와 예상현안: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유럽 07-05), KIEP, 2007. 7.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FTA 협상대상국 통신서비스 시장개방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 2006. 12.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ion and Markets 2006(12th REPORT), 2007. 3.
- OECD,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2007.
- ITU, Trends in Telecommunication Reform 2004/2005, 2004.
- OECD,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2006.
- InfoDev,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Handbook, 2000.
- ITI, Telecoms Market Report(국가별), 2007.
- EU 회원국 규제당국 홈페이지
- EU 회원국 주요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 외교부 FTA 추진단 홈페이지 <http://www.fta.go.kr>

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무역통계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통계정보

외교부 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7), 2006. 2. 6
_____, 외교부 대변인, 2007. 8. 9
_____, FTA교섭총괄과(제07-726호), 2007. 11. 16.
_____, FTA교섭총괄과(제07-732호), 2007. 11. 21.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 9. 21.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2007)
_____,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2007)
_____,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2006)
_____, 전기통신기본법(2007)
_____, 전파법(2007)
_____, 보편적역무고시(2007)

EU Directive, Framework Directive,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7 March 2002.
_____, Access Directive,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7 March 2002.
_____, Authorisation Directive,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7 March 2002.
_____, Universal service Directive,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7 March 2002.
_____,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12 July 2002.
_____, Competition Directive, directive 2002/77/C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ated 16 September 2002. EU Framework Directive(2004)

〈별첨 1〉 무역통계 자료

【한-EU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02	'03	'04	'05	'06	'07. 1~8
수출	21,694 (△10.5)	24,887 (△14.7)	37,830 (△52.0)	43,660 (△15.4)	48,450 (△11.0)	36,514 (△18.9)
수입	17,107 (△14.7)	19,380 (△13.3)	24,187 (△24.8)	27,295 (△12.9)	30,110 (△10.3)	24,048 (△23.0)
총교역량	38,801 (△12.3)	44,267 (△14.1)	62,017 (△40.1)	70,955 (△14.4)	78,560 (△10.7)	60,562 (△20.5)
무역수지	4,587	5,507	13,643	16,365	18,340	12,466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 증가율

- 대EU 수출: '03(14.7%) → '04(52%) → '05(15.4%) → '06(12.8%)
- 대EU 수입: '03(13.3%) → '04(24.7%) → '05(12.9%) → '06(10.5%)

【한국의 5대 수출입 상대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순위	국 가	수 출		수 입		총교역	
		'05	'06	'05	'06	'05	'06
1	중국	10,058	6위	11,337	6위	21,421	6위
2	EU	5,636	9위	3,218	20위	8,612	16위
3	미국	4,299	15위	3,022	22위	7,202	20위
4	ASEAN	3,616	20위	2,977	23위	6,635	23위
5	일본	3,417	22위	2,915	24위	6,635	24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EU의 대한투자】

(단위: 백만불)

연도	'00	'01	'02	'03	'04	'05	'06	누계('62~'06)
EU의 투자액	4,396	3,064	1,680	3,062	3,009	4,780	4,977	40,460
미국의 투자액	2,922	3,889	4,500	1,240	4,717	2,690	1,701	36,632
일본의 투자액	2,448	772	1,403	541	2,258	1,878	2,108	19,514
중국의 투자액	76	70	249	50	1,165	68	40	1,795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의 대EU 투자】

(단위: 백만불)

연도	'01		'02		'03		'04		'05		'06		누계('68~'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EU투자	59	2,246	59	1,087	57	290	76	732	117	680	131	2,702.7	1,075	13,386.7
대미국	518	1,837	475	1,417	581	730	835	1,425	1,094	1,404.2	1,274	2,148.8	7,540	20,667.1
대중국	1,125	991	1,534	2,060	1,819	2,692	2,233	3,634	2,265	3,501.6	2,291	4,504.3	17,837	25,453.9
대ASEAN	217	500	265	433	206	1,192	305	686	438	890.7	721	3,687.1	4,603	16,188.3
대일본	119	95	84	92	67	50	114	328	137	209.2	185	289.1	1,172	1,773.1

자료: 한국수출은행, 신고기준

【한국의 대EU 주요 교역 품목】

(단위: MTI 3단위,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자동차	9,163	10.2	18.9	반도체제조용장비	1,676	21.9	5.6
무선통신기기	7,600	-11.2	15.7	자동차	1,624	48.7	5.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437	24.5	15.3	반도체	1,399	-0.1	4.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132	128.3	6.5	농약 및 의약품	1,334	30.4	4.4
반도체	2,755	25.1	5.7	자동차부품	1,270	3.1	4.2
컴퓨터	2,108	-20.9	4.4	계측제어분석기	1,147	0.6	3.8
영상기기	2,092	-7.5	4.3	원동기 및 펌프	1,104	23.4	3.7
건설광산기계	1,105	41.2	2.3	기계요소	1,093	11.8	3.6
자동차부품	983	48.7	2.0	정밀화학원료	782	14.5	2.6
철강관	868	208.7	1.8	기타화학공업제품	761	17.9	2.5
전체 총계	48,450	11.0		전체 총계	30,110	10.3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76.9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40.5

자료: 한국무역협회

〈별첨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한-EU FTA 체결시 기대효과

- EU(4.2%)는 미국(3.7%)에 비해 평균관세율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 혜택이 발생
 - 이러한 이유로 일본 업계에서는 한-미 FTA보다 한-EU FTA 협상개시를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단련을 위시한 일 재계는 정부에 대해 日-EU FTA 협상개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의 GDP증가가 예상되며, 고용창출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기대됨

〈표 1〉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 FTA와의 비교

	생산성효과 미고려			생산성효과 고려		
	한-EU	한-미	EU+미국	한-EU	한-미	EU+미국
실질GDP	1.26%	1.28%	2.83%	6.01%	5.97%	7.61%
후생수준	58억불	40억불	112억불	222억불	209억불	277억불
고용	10만8천명	8만3천명	22만6천명	43만3천명	33만6천명	55만3천명

자료: KIEP, "동시다발적 FTA의 경제적 효과," 2007. 7

□ 한-EU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IT부문을 중심으로

- 순수출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순수출 1억 9,548만 달러 증가함에 따라 1,181만 달러의 생산 및 313.9만 달러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

- 세부 산업별 순수출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가 1억 5,871만 달러의 순수출 증대와 1,262만 달러의 생산 유발
 - 정보기기는 479만 달러의 순수출이 135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
 - 정보통신부품은 순수출이 1,050만 달러 감소하고 생산유발효과는 215만 달러 축소
 - 유선통신기기는 순수출이 59만 달러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유발이 5천 달러 축소될 것으로 예상

〈표 2〉 대EU 교역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5년	비중	예상 증감액	예상 증감률
수출증가	관세품목(262개)	5,046	27.20%	247.1	4.90%
	비관세품목(290개)	13,518	72.80%		
	합계(552개)	18,564	100.00%	247.1	1.30%
수입증가	관세품목(262개)	1,052	31.60%	51.6	4.90%
	비관세품목(390개)	2,282	68.40%		
	합계(552개)	3,334	100.00%	51.6	1.50%
무역수지	합계(552개)	15,230	195.5	1.30%	
교역규모	관세품목	6,098	27.80%	298.5	4.90%
	비관세품목	15,800	72.20%		
	합계	21,898	100.00%	298.7	1.40%

〈표 3〉 정보통신기기 효과

구 분	순수출 ¹⁾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유발계수 ²⁾	유발금액	유발계수 ³⁾	유발금액
유선통신기기	-590	0.009231	-5	0.002925	-2
무선통신 및 방송장비	158,709	0.079485	12,615	0.022541	3,577
정보기기	47,871	0.028284	1,354	0.004686	224
정보통신부품	-10,504	0.204777	-2,151	0.062903	-661
합 계	195,486		11,813		3,139

자료: KIEP 세계지역연구회 세미나, “한-EU FTA의 효과와 예상현안: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유럽 07-05)”

〈별첨 3〉 EU 개별회원국 시장진입제도 개괄

○ 오스트리아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Telecommunications Act 2003(TKG 2003)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 변경 및 종료 등 모든 절차를 사전에 규제당국(RTR-GmbH)에 통보(report)할 의무를 지님(TKG 2003, Section 3, Art. 15)
 - ※ 통보 내용: 사업자 이름 및 주소, 사업 조직의 법적 형태, 제공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서비스 개시·변경·종료 예정일 등
- RTR-GmbH은 사업자에게 통보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상응하는 확인 절차 수행
- 주파수 할당 및 면허 부여의 경우, 사업 신청자의 자격에 의거, 비차별적으로 할당되며, 신청서에 제시된 제안대로 주파수 면허 수수료가 정해짐(Art. 54~57)
- GSM 기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통고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은 여전히 주파수 할당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음

○ 불가리아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Law of the Telecommunications(Prom. SG. 88/7 Oct 2003, amend. SG. 19/1 Mar 2005)
- Free Regime: 라디오 주파수 대역,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지 않는 통신서비스 사업자, 또는 인가받은 사업자 및 그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면허 취득 또는 종별면허 하의 등록이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음(Chapter 5, Sec. I, Art. 48)
- 종별면허: 공공 목적을 위하여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통신 네트워크 또는 라디오 장비를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자, 위성시스템 접속을 제공하는 통

신서비스 사업자, 희소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공중통신망 사업자는 종별면허의 대상이 됨(Art. 49(1))

※ 종별면허 등록 절차

1. 종별면허 신청자는 등록(Register)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종별면허의 조건 및 의무사항에 일치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
 2. 규제당국(CRC)은 신청서 및 등록비 수령 후, 30일 이내 조건 및 의무사항에 합당한 사업자인 경우 등록하고, 증명서(certificate) 발행(Sec. VI)
 - 의무 및 조건사항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CRC는 등록 거부 후 그 사실을 7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
 - 통신사업자의 의무 종류에 따라 Art.73(공공사업자의 개별면허 조건)의 조건 포함될 수 있음
- 개별면허: 희소자원 사용하는 통신망 사용하는 사업자, 유선음성통신서비스 및/또는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임대회선 사업자 등은 개별면허의 대상임(Art. 49(2))

○ 키프러스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 Law of 2004
- 일반 인가: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모든 사업자는 규제당국(OCECPR)에 사전 공식 통지 후 즉시 사업 개시 가능(Part 8)
 - ※ 통지내용: 사업자 이름, 주소,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 사업개시 예정일 등
 - 사업 변경 및 중지에 대해 30일내에 통지해야 함
 - 위원회는 재정적 기여, 행정 요금, 의무전송,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일반 인가하의 사업자에 부과 가능
- 개별적 권리(Individual Right): 희소자원(라디오 주파수 또는 번호 사용)에 대해서는 OCECPR이 개별적 권리 부여

○ 에스토니아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Passed 8 December 2004)
-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상업 등록소의 지점에 가입하거나 등록하여야 하며, 제공 사업자는 에스토니아 국가 통신위원회(ENCB)에 활동 개시 통지를 제출하여야 함(Art. 4)
 - ※ 통지내용: 기업명, 식별코드, 연락처, 제공사업 종류, 사업 제공 지역, 사업개시 예정일 등
- ENCB는 통지 수령 후 7일(평일) 내, 해당 통지를 등록하고 사업자에게 확인서 및 사업자의 권리·의무 설명서를 보냄. 해당 통지 및 사업자의 권리·의무는 통지 수령 후 최소 7일 내 ENCB 웹사이트에 게재됨(Art. 4)
- 번호인가(Numbering authorisation)를 받기 위해, 신청자는 표준형식신청서를 작성 후 ENCB에 제출하여야 하고, 번호이용자가 사전에 정부당국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ENCB의 결정은 면허 수여 후 최소 10일(평일) 내 웹페이지에 게재됨. 번호인가는 1년 기준으로 발행되며, 한번에 1년씩 연장이 가능함

○ 핀란드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Communications Market Act(393/2003)
- 공중 통신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핀란드 통신규제당국(FICORA)에 우편 또는 통신을 통해 서면 통지해야 함
- FICORA는 통지 수령 후, 일주일 이내 확인 절차 마무리 후,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통지(Chapter 2, Sec. 13~15)
- 개별 면허: 디지털지상파 매스컴 네트워크, 공중통신을 위한 이동망에서 사용되는 라디오 주파수가 대상으로, 면허 부여는 MoTC, 주파수 관리는 FICORA에서 담당하며, 면허 신청은 서면, 전신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함(Sec. 4~12)
 - ※ 요건에는 재정 자원, 규정에의 합치,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라디오 주파수 보

유 등이 포함되며, 동 요건은 각각의 개별면허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됨

〈표 1〉 핀란드의 역무별 진입규제

사업자 종류	진입 규제
유선통신 네트워크 제공 사업자	등록/통지(registration/notification)
유선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록/통지
무선통신 네트워크 제공 사업자	개별 면허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록/통지
교환 데이터(switched data) 네트워크 제공 사업자	없음
교환 데이터(switched data) 서비스 제공 사업자	없음
재판매 사업자	없음

자료: ITI, 2007

○ 프랑스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Law of July 26, 1996 on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Law No. 96-659)
- 일반적 허가제도에 따라 설비보유 통신사업자는 규제기관(ARCEP)에 신고함으로써 사업개시가 가능함. 보편적 서비스 의무와 무선 주파수 사용권한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허가 법령을 적용
- 면허의 수는 주파수의 희소성에 기인하는 기술적 조건에 의해서만 제한하며,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참여 사업자 수는 모든 기술에 대해 주파수의 희소성에 의해 제한함
- 주파수 할당은 언제나 효과적인 경쟁을 고려함

○ 독일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Telecommunications Act(TKG)

- 기존의 특별인가(special authorisation)가 2004년 신법으로 인해 폐지, 공중 통신네트워크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서면 통지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됨. 규제당국(BNetZA)은 일주일 이내에 통지 및 관련 사업자의 자격에 대해 확인(certify)함(Sec. 6)
- ※ 통지내용: 사업자 정보, 회사등록번호, 주소, 제공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개시 예정일 등
- 무선사업자와 관련 전반적으로 유선사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나, 무선주파수에 대해서는 면허취득 필요
- 면허의 수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성 확보 외의 이유로 제한 불가
- 단, 관로권(right of way) 관련, 이전 체제인 1종, 2종, 3종 면허가 여전히 유효

〈표 2〉 독일의 전송회선의 운영에 대한 면허

구 분	내 용	
제1종 면허 (이동무선(Mobile Radio)을 위한 전송회선)	면허취득자 또는 타인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이동무선 서비스에 대한 면허	이동전화사업자, UMTS/IMT-2000사업자, 호출사업자(Paging), 주파수공용통신사업자(Trunked Radio)
제2종 면허 (위성면허(Satellite License)를 위한 전송회선)	면허취득자 또는 타인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위성서비스에 대한 면허	위성통신사업자
제3종 면허 (기타 통신 서비스를 위한 전송회선)	면허취득자 또는 타인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제1종 및 제2종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면허	

○ 그리스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provisions(Law No. 3431/2006)

- Regulation on General Authorizations(EETT Decision no 390/3/31-6-06)
 - 공중 통신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 특수 라디오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업 의도에 대한 등록 선언(registration declaration) 수행
 - 3개월 이내에 규제기관(EETT)의 반대 없으면 동 선언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단, 희소자원(주파수, 번호) 사용 및 공유지나 사유지를 통과하는 관로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통신망 배치는 개별면허 대상임
 - 단순재판매 사업자는 면허 또는 인가 획득 불필요, EETT에 신고(notify)만이 요구됨(단순 재판매임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서비스에 대한 설명서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정확한 내용 통고 필요)
- 헝가리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Act 100 of 2003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 통신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개시 30일 이전 등록을 위해 규제기관(NHH)의 통신지역사무소에 통지(notification)함으로써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음(Part III, Chapter VIII, Art. 74-77)
 - 주파수 할당 및 라디오 면허는 개별면허대상으로, 관련 당국의 결정에 의해 경매 및 입찰의 방법을 통해 면허 부여됨(Art. 69)
- 아일랜드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Communications Regulation Act, 2002(No. 20 of 2002)
 - Telecommunications(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6(No. 34 of 1996)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는 규제기관(ComReg)에 사전 통지 후 사업개시 가능함
 - 단, 주파수 면허(Spectrum Licence)의 경우는 서비스 종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라트비아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Law on Regulators of Public Services
 - Electronic Communications Law No 304 2004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위원회(PUC)에 등록 통지서를 송부,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공중 접속을 보장해야 함. 일반인가 규정은 수수료, 재정 등의 조건을 포함함
- 기존 공중통신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희소자원 사용 사업자는 개별면허 대상임
- 이용권이 필요한 라디오 주파수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경매를 통해 발급

○ 리투아니아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Order No. 176 of the Director of the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Engaging in Telecommunications Activities
- 공중 유선전화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공중 무선전화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전용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제당국(RRT)에 사업의 시작 및 종료에 대해 통지 의무를 지님
- RRT는 통지 수령 후, 7일 이내 수령확인을 발행

○ 몰타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Electronic Communications(Regulation) Act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모든 사업자는 규제당국에 사전 통지 의무를 지님. 규제당국의 수령은 인가받음을 의미함

○ 폴란드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Telecommunications Act of 16 July 2004
 -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Infrastructure of 21 Dec. 2004 on a specimen request form for entry in the register of telecommunications undertakings or for a modification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일을 적시하여 국제당국(UKE) 의장에 서면 통지, 의장은 사업자를 7일 이내 등록해야 함
 - ※ 통지내용: 기업명, 주소, 기업형태, 세금식별코드, 연락처, 제공사업에 대한 설명, 제공 지역, 사업개시 예정일 등

○ 포르투갈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Electronic Communications Law, Law no. 5/2004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공급 사업자는 제공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사업 개시 예정일 규제당국에 사전 통지, 규제당국은 통지서 수령후 5일 이내에 확인(confirm)
- 관료권, 주파수 사용 및 번호 이용에 대한 권리는 사업자 요청에 의해 권리 부여

○ 루마니아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Government emergency ordinance no. 70/2006 on the general regulatory framework for communications, approved, with amendments and completions
 - Law no.239/2005 on the amendment and completion of several normative act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
- 공중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주파수 사용 서비스 사업자는

규제당국(ANRC)에 사전 통지(notificataion) 의무를 지님

- 통지 후 7일 이내 ANRC로부터의 개별 통보가 없을 경우, 통지가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
- 통지 의무 면제: 2005년 7월 이후, 라디오 주파수 이용 개인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의 통지 의무 사라짐(단 권리와 의무 조항은 강화)
- 라디오 주파수 및 번호의 이용은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면허가 부여되어야 함
- ※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IGCTI, 번호와 관련해서는 ANRC가 담당

○ 슬로바키아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Telecommunications Act of 2000
 -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of 2004
- 통신네트워크/서비스 공급자는 일반인가 대상으로 공급전에 서비스 공급 개시 의도를 규제당국(TÚSR)에 통보할 의무를 지님
- ※ 사업 개시, 변경, 취소 시 서면 통지 및 의무 존재함. 단, 사업자 수 200 이하, 연간 수입이 2백만SKK 이하, 사업자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통지의 의무가 면제됨
- 단, 번호 및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는 개별인가 대상임
- VoIP 서비스의 경우, 2000년 11월 TÚSR이 통신법에 따라 VoIP 서비스 면허 방식을 개정하는 제안을 공표하였고, 그 이후 VoIP 공급자들은 면허 대신 특정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됨

○ 스페인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General Telecommunications Law
-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일반인가로 사업 개시 가능

- 단, 공중 라디오 주파수 사용 전기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개별면허 취득 필요

〈표 3〉 스페인의 개별면허 분류

유형	Service
Type A	제한된 사용자 그룹에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네트워크 설치 및 사업
Type A2	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
Type B1	전용회선 서비스 사용권을 포함한 유선 네트워크의 공중 사업
Type B2	무선 네트워크 공중 사업
Type C1	전용회선 서비스 사용을 포함한 유선네트워크의 공중 데이터통신 사업
Type C2	무선 네트워크의 공중 데이터통신 사업

자료: ITI, 2007 재정리

○ 영국

-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 관계 법령
 - Consolidated Version Of General Conditions as at 26 April 2007
- 모든 전기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자는 통지(신고)만으로 사업 개시 가능함. 단, 일반 조건 및 개별 조건이 존재함. 이는 사전 심사의 요건이 아닌 기본적인 자격을 의미함
- 이동통신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 인가 필요
- 주파수의 경우 개별면허의 대상임
- 진입요건 및 절차상 특징
 - 진입에 관한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of Entitlement):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건(〈표 4〉 참조)
 - 특정 조건(Specific Conditions): 보편적 서비스 원칙, 접속 원칙, SMP 의무 등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조건

〈표 4〉 일반 진입규제에 따른 각 사업자별 일반 조건

부 관	모든 ECNs/ECSs	공공 ECNs/ECSs	공공 전화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1. 일반 접속 및 상호접속 의무	1.2 또는 1.3의 경우에만 해당	○ (네트워크 사업자)	○ (네트워크 사업자)
2. 표준화 및 인터페이스	○	○	○
3. 네트워크의 효율성/적정성 유지			○ (이동사업자 제외)
4. 긴급통신 번호부여			○
5. 긴급통신 계획			○
6. 공중전화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해당		
7. 필요 전송의무(Must carry obligation)	TV수신을 위한 '적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업자		
8. 운영자 지원, 사용자 정보 유지/유지장비			○
9. 대 고객 서비스 제공계약 부담 최소화		○	○
10. 정보의 영속성 보장 및 공표의무			○
11. 이용량 측정 및 이용료 부과		11.1과 11.2의 경우에 한정	○ (회전분계점에 따라)
12. 개별 추가요금 부과			○
13. 이용요금의 면제			○ (이동사업자 제외)
14.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분쟁조정절차 명시		○	○
15.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시 할인			○
16. 추가설비 제공			○
17. 착신 전화번호의 분배 및 부여	○	○	○
18. 번호이동성	○	○	○
19. 전화번호부 또는 번호안내서비스 제공	○	○	○
20. 비 지역번호	○	○	○
21. 서비스 품질(Qos) 유지		○	○

자료: General conditions of entitlement(Ofcom 홈페이지)

〈별첨 4〉 면허의 종류

면허 형태	주요 특징들	제공 서비스
개별면허 (Individual Licen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명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발행됨 - 일반적인 세부적 면허 - 세부적인 역무가 포함 - 어떤 경쟁적인 선택과정을 통해 자주 주어짐 - 불충분한 자원이나 권리에 허가되어지고, 규제자는 서비스가 특정 방식에 제공되어지는지를 감독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시장에서 기본 PSTN 서비스 - 이동 무선 서비스 -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별면허 (General Authorizations 또는 Class Licen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면허에서는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확립된 일반적인 조항들을 얻기 위해 상당한 규제목적이 있는 경우 - 기본권리와 역무, 그리고 허가된 서비스 클래스에 규제조항을 설정 - 경쟁적인 선택과정 없이 발행됨: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비를 운영하는 것이 허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전송서비스 - 재판매 서비스 - 개별 망 - 국제 서비스 - VSATs - EU에서 기본 음성과 부가가치 서비스를 포함하는 모든 전기통신 서비스
비면허 서비스 (Unlicens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절차나 자격요건이 없음 - 때때로 규제에 의해 등록조건이나 일반적인 지원규칙들이 부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Ps - 부가가치 서비스 - WLAN hotspots - Tele-kiosks

자료: InfoDev,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Handbook, 2000

〈별첨 5〉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책임 구분

	라이선스발급/허가 책임		라이선스 요구/ 허가 감독
	유선	무선	
그리스	R	R	R
네덜란드	R (OPTA)	R (Radiocommunication Agency)	R
덴마크	라이선스, 등록 불필요	R	R
독일	R	R	R
룩셈부르크	M	M	R
벨기에	R	R	R
스웨덴	R	R	R
스페인	R	M	R
슬로바키아	R	R	R
아일랜드	R	R	R
영국	R	R	R
오스트리아	R	R	R
이탈리아	M	M	M
체코	R	R	R
포르투갈	R	R	R
폴란드	R	R	R
프랑스	R	R	R
핀란드	R	M	R
헝가리	R	R	R
한국	M	M	M

* R-regulator, M-Ministry

자료: OECD,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2006